

육아기 부모 단축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나. 제안이유

○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급여를 보전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 위 사업은 신청 접수와 지급이 반복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필수로,

청년 근로자 지원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

-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상 사업 :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 세부내용

구분	사업명	수탁·대행 공공기관명	위탁기간	예산액(24년도)	비고
동의안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2024. 6.~ 2026. 12. (2년 7개월)	700,000천원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¹⁾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²⁾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에

1) 제7조(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대상사업 검토

-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급여를 보전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① 고용노동부의 최초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
 - ② 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함으로써 정부의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주는 사업임.
- 상기 기술한대로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전담인력 채용,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 사업홍보 등을 위해 2024. 6.~2026. 12.까지 2년 7개월 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7억원(도비)임.

- 동 사업은 신청 접수와 지급이 반복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필수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근로자 지원 등 경제지원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인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도 보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어 보임.
- 다만, 통상임금 상한액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 단축 5시간을 가정하면 월단위 도 보전금이 25만원으로 고소득 근로자 일수록 도 보전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대적 고소득자에 대한 과잉 복지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4. 7. 1.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법령에는 기존 최초 5시간에서 확대되어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예산액이 두 배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 등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시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위탁기관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